

## 영국의 아동빈곤법 (Child Poverty Act, 2010)

### I. 여는 글

2009년부터 불거진 서울시의 초·중·고교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관한 문제는 단지 서울시 의회와 서울시장의 힘겨루기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국민적 이슈가 되었다. 핵심 쟁점은 빈곤층 자녀에 대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하는 듯하지만 빈곤층 자녀가 아닌 학생을 포함하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여야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무상급식의 전면실시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은 복지국가의 역할, 즉 사회 빈곤층에 대해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담론을 한국 사회 내에 불러일으켰다. 사실 사회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구 선진국들도 직면한 문제이기도 하다. 복지국

가의 개념이 일찍부터 발달한 영국 역시 빈곤층의 확대는 심각한 사회 문제 중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2010년에 제정된 ‘아동빈곤법(Child Poverty Act, 2010)’<sup>1)</sup>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영국 내의 빈곤층에 속하는 아동의 수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전에도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었다. 영국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7~2008년 기준으로 약 290만 명의 영국 어린이들이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정에서 자라고 있다.<sup>2)</sup> 아동 빈곤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긴 영국 노동당 정부는 이미 1999년 3월, ‘2020년까지 영국 아동 빈곤 척결’에 대한 아젠다를 제시하였고, 2003년 12월, 아동 빈곤을 측정할 세 가지 기준 - 상대적 저소득, 절대적 저소득 및 물질적 궁핍 - 을 기반으로 하여, 아동 빈



- 1) 아동빈곤(Child Poverty)의 정의는 아동이 사회·경제적 불이익(Socio-economic disadvantage)을 경험한 상태를 의미하며, 이 법 Section3~6에서 규정한 저소득 가정에 속한 아동들을 일컫는다.
- 2) BBC, “Child poverty duty to become law”(2009년 6월 12일): <http://news.bbc.co.uk/1/hi/education/8095775.stm> (2011년1월 12일 접속).

곤을 측정할 프레임워크 ‘Measuring Child Poverty (DWP 2003)’를 발표하였다. 이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정부는 2010년까지의 회계연도에 상대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 수를 검토하였고, 2010년까지 아동 빈곤층을 줄이려는 정책을 강구해 왔다. 이러한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내의 관련 부처들은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아동 빈곤 척결에 관한 부처 간의 거시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규정과 법령은 미비했다.

2009년 1월 노동당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장 및 학계의 자문을 받고 관련 보고서들을 작성해 왔다. 결국 노동당은 2009년 ‘아동 빈곤 척결에 관한 자문 보고서 (Ending Child Poverty: Making It Happen (HMT, DWP, DCSF, 2009))’, 곧이어 이 보고서의 구체적인 아젠다를 담은 전략안인 2020년까지 아동 빈곤 척결을 위한 로드맵: Ending Child Poverty: Mapping the Route to 2020’을 발표하였다. 이를 토대로 노동당 의원들의 주도로 아동빈곤법안(Child Poverty Bill)<sup>3)</sup>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총선으로 국회가 해산되기 직전인 2010년 3월 25일 여왕의 재가를 받아 법령(Child Poverty Act 2010)으로 확정되어 발효되었다.

2010년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아동빈곤법안이 발의된 바 있는 국내사정을 감안



3) Part 3 of Library Research Paper 09/62 참조.

4) Child Poverty Act 2010, Explanatory Notes, para 6.

하여 볼 때, 영국의 아동빈곤법이 규정한 빈곤층 무상급식 관련 조항은 국내 급식문제에 대한 사회적 담론의 지평을 넓혀 줄 것이다.

## II. 아동빈곤법의 핵심 내용

영국 아동빈곤법이 규정한 본 법의 목적은 “성공적으로 아동 빈곤을 척결하고 [본법이 규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감시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sup>4)</sup> 아동빈곤법은 또한 ‘2020년 아동 빈곤 척결을 위한 로드맵’을 기반으로 Section 3~Section 6에서 규정한 4가지 유형의 빈곤 아동의 수를 대폭 줄이도록 제정되었다. 정부는 3년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전략 보고서를 출간하여야 하며, 매년 법률 집행의 경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의 집행은 중앙 정부 및 England의 지방정부에게 위임한다.

## III. 아동빈곤법의 구성 및 세부 내용

### 1. 아동빈곤법의 구성

영국 아동빈곤법(Child Poverty Act, 2010)은 크게 3개의 Part 및 2개의 Schedules로 구성되어

있다.

- Part 1에서는 아동 빈곤에 따른 정부 목표 설정, 정책 및 영국 국무장관 및 위임정부들의 연간 보고서 출간 의무를 다루고 있으며(National Targets, Strategies and Reports: Section 1~18);
- Part 2에서는 잉글랜드에 속한 지방정부 및 조직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Duties of Local Authorities and Other Bodies in England: Section 19~25);
- Part 3에서는 기타 및 일반적인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Miscellaneous and General: Section 26~32);
- 기타 별첨(Schedule 1, 2)의 Schedule 1에서는 아동 빈곤위원회(Section 8)의 구성 및 역할이 자세하게 명문화되어 있고, Schedule 2에서는 본 법 제17조의 목표 설정기간 이후의 갱신 및 법적 효력에 대한 의무(Section 17)가 규정되어 있다. 본 법은 영국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의 법적 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는 본 법이 규정한 목표 달성 기간 내에 4가지 빈곤 형태에 따른 각각의 목표 수치를 충족시켜야만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본 법은 영국의 중앙정부, 웨일즈 및 스코틀랜드, 북 아일랜드까지 영 연방 전 영역에 걸쳐 효력

을 가진다.<sup>5)</sup> 따라서 중앙정부는 본 법 시행의 목적, 즉 영국 아동 빈곤 척결을 위한 국가정책 결정 및 집행에 있어 위임정부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2. Part 1. 아동빈곤법 세부 내용

### (1) 아동빈곤 목표설정(Targets: Section 3~6)

본 법의 조문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영국 중앙정부는 4가지의 아동 빈곤 유형 및 목표 설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본 법 제3~6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4가지의 빈곤 형태는 ‘저소득(Low income)’을 기본적인 판단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다른 빈곤 요소(물질적 궁핍) 역시 고려하여 노동연금부서의 가족 자원 분석 조사(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Family Resources survey)를 토대로 빈곤 형태 및 통계 수치를 도출하였다.

#### ① 상대적 빈곤(The relative low income target: Section 3)

상대적 저소득 가정<sup>6)</sup>— 평균 영국 가정 순 수입<sup>7)</sup>의 60% 이하—에서 살고 있는 아동의 10% 이내 감축을 목표로 한다.



- 5) 본 법 Part 3, Section 30 규정: Part 1, Section 1~10—영국의 중앙정부,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 아일랜드에 효력(Sub (1)); Section 11—스코틀랜드에만 적용 (Sub (2)); Section 12—북 아일랜드에만 적용(Sub (3)); Part 2와 Section 26은 영국 중앙정부 및 웨일즈에만 적용(Sub (4)).
- 6) 본 법 제 3~6조에 정의하는 빈곤 가정(Qualifying household)은 표본 조사에 의해 정해진 것임을 밝혀 둔다.
- 7) 가족 순 수입(Equivalised income)은 가족당 구성원의 수(어른, 어린이)를 고려하여 조정된 가정의 수입을 말한다.

② 저소득과 물질적 빈곤(Combined low income material deprivation: Section 4)

평균 영국 가정 순 수입 70% 이하에 속하는 가정의 아동 비율을 5% 이내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법의 대상은 저수입과 기본 생활 조차 되지 않는 낮은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아동이다. 장관은 물질 궁핍<sup>8)</sup>을 경험한 아동들의 형편에 따른 구체적인 규정을 정할 의무를 지닌다(Section 4(3)).

③ 절대적 빈곤(The absolute low income target Section 5)

영국 정부가 적용한 기준액<sup>9)</sup>의 60% 아래에 해당하는 절대적 빈곤 아동의 비율을 5% 이내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④ 지속적인 빈곤(Persistent poverty target: Section 6)

본 법의 대상은 지난 4년 동안 적어도 3번 이상 가정 순 수입이 평균의 60%가 되지 않는 가정의 아동이다. 또한 이는 장기간 빈곤이 아동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에 바탕을 두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속적인 빈곤을 경험한 아동이 단기간 빈곤을 겪은 아동보다 학습 문제(Risk), 즉 퇴학 및 정학과 같이 교육에서 도태될



8) 물질적 궁핍(material deprivation)은 현재 상황에 맞게 그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9) 적용된 기준액(the adjusted base amount)은 2020년 4월 1일인 회계연도를 시작으로 매년 화폐의 가치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 5, Subsection(3).

10) The Circumstances of Persistently Poor Children: Evidence from the Families and Children Study, DWP Research Report 487, 2008.

11) 아동빈곤위원회의 자세한 내용은 Schedule 1: 아동빈곤위원회(The Child Poverty Commission) 참조.

12)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의 경우에는 장관(Minister)이 관련 법안에 관한 의무를 갖게 되며, 북 아일랜드의 경우 본법의 관련 법률 정책 담당자(relevant Northern Ireland department)가 의무를 갖게 된다.

확률이 높았다.<sup>10)</sup> 하지만 이러한 지속적인 빈곤 목표치의 설정은 현재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규정이 어떻게 운용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따라서 국무 장관은 2015년이 되기 전까지 지속적인 빈곤 목표치 설정 또는 이를 대체할 만한 다른 목표 설정 의무가 요구된다 (Subsection (3),(5)).

영국 국무장관은 앞에서 살펴본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규정된 4가지 형태의 아동 빈곤 척결 목표치를 규정된 기간(Target year: 회계연도 2020년 4월 1일 시작: Section(2))까지 충족시켜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진다.

(2) 아동빈곤위원회의 설치<sup>11)</sup>(The Child Poverty Commission: Section 8, 13)

본 위원회는 영국 국무장관이 정한 위원장 및 멤버들과 위임 정부인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의 장관 및 북아일랜드 업무 담당자<sup>12)</sup>가 각 한 명씩 지명한 사람으로 구성된다(Schedule 1(1)). 위원회에는 아동 빈곤 정책 관련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1(4)). 위원회의 역할이 장관 및 담당자에게 아동빈곤법 관련 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의견

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권한을 위임 받은 장관 및 담당자 역시 위원회의 조언 및 자문을 먼저 구할 수도 있다. 특히 위원회의 특정인에게 자문을 구할 수도 있으며, 정보 제공이 필요할 시에는 정확한 날짜를 통보해야 한다(Section 13). 그 의견이 합리적이어서 실행가능성이 있을 시에는 즉시 공포된다. 하지만, 아동 빈곤 법안의 의회 제정 단계에서 위원회의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우려의 소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sup>13)</sup> 이에 장관은 목표 설정 기간이 다하면 정부의 의견을 물은 후에 더 이상 위원회의 역할이 요구되지 않을 시에는 해산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뿐만 아니라 관련 참고인의 지위를 철회하거나 필요시 재조정할 수도 있다(Section 8(4)~(6)).

### (3) 장관들(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및 웨일즈) 및 담당자(북 아일랜드)들의 아동 빈곤 정책 결정 의무(Strategies of UK & Scottish, Northern Ireland: Section 9~13)

본 법의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아동 빈곤 근절에 관한 영국(UK)의 정책들 및 장관들의 정책 수립 시 고려되는 의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임정부인 스코틀랜드와 북 아일랜드 장관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스코틀랜드와 북 아일랜드의 장관은 본 법의 발효 후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영

국 아동 빈곤 전략을 의회 회기 전에 제출 및 발표해야 한다(Section 9 (1)). 또한 이와 관련한 전략에 대해 스코틀랜드 및 웨일즈의 장관과 북 아일랜드의 관련 담당자의 운용 계획도 언급해야 한다(Section 9(3)).

장관(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및 웨일즈) 및 담당자(북 아일랜드)들은 아동 빈곤 철퇴를 위한 전략 정립 시 고려해야 하는 수단들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 수단은 ‘기본원칙(Building Blocks)’에 근거한다. 그 기본원칙에 근거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Section 9(5)).

- 빈곤 아동 부모들을 위한 직업 교육(Parental employment and skills);
- 재정지원(Financial support for children and parents), 양육에 관한 정보 및 교육 지원(Information, advice and assistance to parents and promotion of parenting skills)
- 육체 및 정신/건강 교육 및 사회 복지 서비스 (Physical and mental health, education and social services)
- 환경조성 및 주택지원(Housing, the built and natural environment and the promotion of social inclusion)

또한 아동들이 가능한 한 사회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며(Section 9 (6) (a)~(b)), 이러한 조치는 영국 내의 아동시설 - 비록 조사대상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 도 적용대



13) Steven Kennedy, Child Poverty Act 2010: A Short Guide, p.4(2010).

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Section 9(6), (7)(a)).

한편 본 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관 및 담당자(북 아일랜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타임 테이블을 설정해야 한다. 이 타임테이블은 본 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규정되어 있는 각 목표치를 충족시키면서 진행시켜야 한다(Section 9(7)(b)). 아울러 기존 정책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이전에 시행되었던 아동 관련법 및 정책들을 고려해야 하며, 추가될 정책들은 주요 4가지 빈곤 목표 설정(Section 3~6) 및 본 법이 정한 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Section 9(8)). 마지막으로 잉글랜드의 장관은 본 정책을 수립할 시 아동빈곤위원회가 제공하는 정보 및 조언을 참고해야 한다. 2개의 위임정부인 스코틀랜드 및 북 아일랜드와 협의 및 아동 빈곤 정책을 함께 발표해야 한다(웨일즈는 제외). 또한 잉글랜드 내의 지방정부 및 아동과 부모와 관련한 커뮤니티, 조직체와 의견을 나누도록 해야 한다(Section 10(4), (5)).

#### (4) 영국 아동빈곤 관련 정책 연간 진행 상황 보고서 출간(Section 14, 15)

본 법 제14~15조에는 장관의 의무 중 하나인 연간 보고서 발행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연간 보고서는 의회의 연례 보고서 제출 전에 발간되어야 한다. 보고서에는 본 법의 제3조에서 제6조에 해당하는 목표 수치 도달을 위한 진행

과정과 전략(UK Strategy) 수립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야 한다(Section 14(1)). 아울러 위임정부인 스코틀랜드, 웨일즈 및 북 아일랜드에서 측정된 목표 달성 수치도 포함되어야 한다(Section 14(4)). 만일 목표치를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유가 반드시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Section 14(5)). 장관은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 아일랜드 장관들과 함께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협의해야만 한다(Section 14(6)). 특히 보고서의 내용에는 Section 3~6에 부합하는 목표치의 달성여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그 근거는 공식적인 통계자료<sup>14)</sup> - %로 표기 - 를 토대로 기술되어야 한다(Section 15).

#### (5) 기타 - Section 16~18

본 법 제16조에는 법률의 행사에 있어 경제 상황 및 국고 재정 상태를 고려할 것을 명시했다. 장관(잉글랜드)은 위원회와 각 지역의 위임장관(스코틀랜드와 웨일즈)과 협의 시, 경제적인 효율성과 국고 재정 상태 - 세제(Taxation), 공적 지출(Public Spending) 및 공공대출(Public Borrowing) - 가 정책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이 된다(Section 16(1), (2)). 위임정부인 스코틀랜드 및 북 아일랜드 장관 역시 이와 같은 재정 상태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Section 16(3)). 이 밖에 본 법 제17조는 Schedule 2의 목표 설정 갱



14) 노동 연금부(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에서 규정한 영국의 평균 가족 소득 이하의 데이터 세트를 말한다.

신 및 향후 법적 효력에 대한 규정이며, 본 법 제 18조는 Part.1에서 규정되어 있는 각 용어를 정의했다.

### 3. Part.2 잉글랜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및 의무

#### (1) 지방정부와의 공조

Part 2의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는 잉글랜드에 속한 지방 정부 및 다양한 조직체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잉글랜드 내에서는 아동 빈곤 근절을 위한 활동을 지속 가능한 사회 공동체 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및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집행해 나가려고 한다. 본 법 제19조는 빈곤 아동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Responsible local authorities)이, 본 법 제20조에는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하는 기관/조직 및 해당 업무 담당자의 책임(Partner authorities)이 명시되어 있다(Section 20(2)).<sup>15)</sup> 이 밖에 지방 아동 빈곤 감축 공조 방식(Co-operation to reduce child poverty in local area: Section 21), 지방 아동 빈곤 정책 평가(Local child poverty needs assessment: Section 22), 지방 연대 아동 빈곤 정책(Joint child poverty strategy for local area: Section

23) 및 지속 가능한 공동체 정책(Sustainable community strategy: Section 24) 등이 포함되어 있다.

### 4. Part.3 기타 및 일반 규정

본 법 제26조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 있는 무상 급식에 대한 규정이다. 1996년 교육법(Education Act)이 제정된 이래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국가로부터 생활 보조금 및 수당을 받는 자의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급식과 우유가 제공된다(Section 26). 국무장관은 무상 급식 및 우유를 제공 받는 자격을 조세 감면 혜택(Working Tax Credit)을 받는 자나 저소득 가정의 자녀에게까지 확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Section 26(1)(e)). 하지만 현재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경우에는 단지 생활 보조금을 받는 자의 자녀일 경우에만 무상 급식(우유 포함)을 시행하고 있다.<sup>16)</sup>

## IV. 닫는 글

비록 영국 경제가 호황이던 2004/2005년도(약 2백 70만 명)에는 잠시 빈곤 아동수가 낮아졌지만, 세계 금융위기가 시작되던 2008/2009



15) Section 20(2)에서 규정하고 있는 Partner는 다음과 같다. (a) 지방정부에 속하지 않은 분과 위원회(council); (b) 경찰관; (c) 경찰서장; (d) 전략 교통 기구(an Integrated Transport Authority for an integrated transport area in England); (e) 런던 교통국; (f) 보건 전략국(a Strategic Health Authority); (g) 1차 진료소(a Primary Care Trust) 및 (h) 1998년 제정된 법무 및 무질서대책법의 39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청소년 범죄 예방 위원회(a youth offending team established under section 39 of the Crime and Disorder Act 1998).

16) Supra note 4, p.19.

년에는 약 2백 80만 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sup>17)</sup> 따라서 노동당 정부는 2010/2011년에 1998/1999년의 빈곤 아동수(약 3백 40만 명)의 절반 수준으로 그 수를 감축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남유럽의 경제위기가 영국 국내 경기의 위축으로 이어져 영국 정부의 재정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세수증대를 위해 2011년부터 소비세(VAT)까지 부과되어 국내 경기를 다시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비록 2010/2011년의 통계치가 발표되는 2012년 봄까지는 빈곤 아동의 수를 파악할 수 없으나, 노동당 정부가 내세웠던 목표치(약 1백 70만 명)의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본 법의 본격적인 시행 첫 단계에서 노동당 정권이 실각함으로써 그 추진력을 잃게 되었다. 현재는 보수당-자유당 연립 정권이 들어서 노동당이 세웠던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법의 총 집행 책임자인 Lain Duncan Smith 영국 노동/고용부 장관(Secretary of Work and Pensions)은 장관으로 지명된 직후인 2010년 5월 20일에 2008/2009년 빈곤 통계 지수를 발표하며 지난 노동당 정권의 지원 위주의 빈곤 정책은 실패했다고 평했다. 그는 빈곤을 근절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그들을 일터로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상 David Cameron 역시 악화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아동 빈곤 근절을 위한

재정 이외의 수단 역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재의 보수당/자유당 연립 정권 내에서도 이 법률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수당 일각에서는 이 법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영국의 무너진 가정 및 사회·경제적(마약, 알코올)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법의 집행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에 반해 자유당에서는 이 법안을 강하게 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장애 가족 및 자녀들에 대한 지원까지 추가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선부터 예단이긴 하지만 지난 노동당 정부가 세웠던 2010/2011년 목표치는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아동 빈곤 척결 2020/2021’은 그 집행 초기부터 정권 교체라는 암초를 만났으며, 악화된 정부의 재정 상황 역시 본 법의 앞날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한편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상 급식의 경우에는 현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더 이상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sup>18)</sup> 이를 토대로 볼 때 한국의 전면적인 무상 급식의 확대 혹은 축소는 해당 부서 및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논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양 건 희

(영국 주재 조사원)



17) Ending Child Poverty: Mapping The Route to 2020, (24 March 2010), p.5.

18) Supra note 4, p.19.